

2023 회계연도 일반 · 특별회계 세입 · 세출 추가경정예산(안)

검토보고

(감사담당관 소관)

2023. 09. 06.

전문위원 정진만

1. 제안이유

○ 2023. 08. 29.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일반 · 특별회계 세입 ·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45조¹⁾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2. 예산규모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예산안	기정예산	증(△)감	
			금 액	비율(%)
세 입	0	0	-	-
세 출	349,729	347,967	1,762	0.5

1) 제145조(추가경정예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.

제142조(예산의 편성 및 의결)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.

3. 세출현황

(단위:천원)

회 계 별	추경예산안	기정예산	비 교 증 감	
			증(△)감	비율(%)
계	349,729	347,967	1,762	0.5
일반회계	349,729	347,967	1,762	0.5
특별회계	0	0	-	-

■ 세입 검토의견

○ 감사담당관 세입추가경정예산은 없으며,

■ 세출 검토의견

○ 감사담당관 세출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76만원(0.5%) 증액된 3억 4,97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, 주요내용은

- 감사담당관 직원 충원(2명)²⁾에 따른 특정업무경비(감사업무 활동수행비)로 176,2만원 증액된 2,672만원이 편성됨.

○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 및 요건에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.

2) 인력(2명) : 청원업무 및 구청장직통문자서비스 담당, 계약심사 담당